

제 호

보안교육기관 지정서

① 교육기관의 명칭

② 교육기관 소재지

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 (인)